

보험급여의 청구절차

- 국외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,
진폐등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특례,
미지급의 보험급여 -

1. 국외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

가. 절차

- ① 재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해발생 신고서 2부, 주재공관장 확인서 또는 당해 외국의 공증서, 초진 소견서 제출
- ② 10일 이내 서류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신고서와 지연 사유서를 우선 제출

나. 국내요양 통보

- ① 30일 이상의 장기 요양시 국내요양을 위한 여유기간 필요 (30일 이상)

다. 요양비 산정 및 청구

- ①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요양에 대하여 요양비 청구서 2부 제출

* 첨부서류 : 초진소견서 및 진단서 2부, 진료비 지불 영수증 사본 2부, 요양비의 지급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

- ② 요양비는 당해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으로 함.

2. 진폐 등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특례

가. 개설

진폐증 및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경우 직업병이 누적, 발견되는 시점에서는 결근, 작업능률저하 등 평균임금의 감소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였다. (산재보험법 제38조 5,6항)

나. 특례 대상

- ① 진폐등 업무상 질병이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으로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낮을 경우
- ② 진폐등 업무상 질병이환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이 휴·폐업 되거나 퇴직등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

다. 산정방법

- ① 직업병으로 진단된 달이 속하는 전전분기의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.

※ “직업병으로 진단된 달”이라함은 진폐증으로 인한 보험급여액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된 당시의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

상의 발부일자가 속하는 달을 말한다.

- ② 당해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업종, 규모 및 성별,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의 1분기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그 분기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

라.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·폐질등급기준 및 장애등급기준 (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 관련) (별표5) (개정 99. 10. 7.)

(1) 병형·환기기능 및 심폐기능장애의 판정기준

① 병형판정기준

- 진폐증의 이환여부와 진행도는 엑스선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하되,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 심사 또는 진폐근로자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회의의 자문을 거쳐 판정한다.
- 엑스선 사진판독은 국제노동기구(ILO u/c)의 진폐증 엑스선 사진 정밀분류법에 의한다.

② 환기기능의 판정기준

폐활량을 80%이상과 미만을 기준으로 각각 정상과 경미 이상의 침습으로 구분한다.

③ 심폐기능의 장애판정기준

㉠ 고도장애

환기기능이 55%이상 제한되고, 안정시 대화나 옷을 입을 정도로도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의 장애정도가 70%이상인 자

㉡ 중등도장애

환기기능이 45%이상 제한되고, 50m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의 장애정도가 50%이상인 자

㉢ 경도장애

환기기능이 30%이상 제한되고, 평지에서 1km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수 없는 상태의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의 장애정도가 40%이상인 자

㉣ 경미장애

환기기능이 20%이상 제한되고,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연령이 같은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장애가 20%이상인 자

(2) 요양기준

- ①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[활동성폐결핵·흉막염·기흉·기관지염·기관지 확장증·폐기종(심폐기능 경도장애이상)·폐심성]이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- ② 진폐증으로 진단된 자로서 고도의 심폐기능 장애가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- ③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응영의 크기가 1측(側)폐야에 2분의 1을 넘어 병발증 감염의 예방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- ④ 진폐의증(0/1)인 자로서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- ⑤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이 환자(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에 한한다)로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

(3) 폐질 등급 기준

폐질의 상태	등급
- 혼자 힘으로 식사·용변 등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이 불가능한 자	제 1 급
-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, 식사·용변 및 병동안에서의 100m이내의 보행 등 단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자	제 2 급
- 식사·용변 등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항상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자	제 3 급

(4) 장애등급기준

신체장애 등급	구 분	엑스선 사진의 상(像)
1급	고장해 (F3)	환기기능이 55%이상 제한되고, 심폐기능의 장애정도가 70% 이상인 자
3급	중등도장해 (F2)	환기기능이 45%이상 제한되고, 심폐기능의 장애정도가 50% 이상인 자
5급	경도장해 (F1)	환기기능이 30%이상 제한되고, 심폐기능의 장애정도가 40% 이상인 자 중 진폐증 병형이 4형으로 판정된 자
7급	경도장해 (F1)	환기기능이 30%이상 제한되고, 심폐기능의 장애정도가 40% 이상인 자 중 진폐증 병형이 1·2·3형으로 판정된 자
9급	경미장해 (F1/2)	환기기능이 30%이상 제한되고, 심폐기능의 장애정도가 40% 이상인 자 중 진폐증 병형이 3·4형으로 판정된 자
11급	경미장해 (F1/2)	환기기능이 20%이상 제한되고, 심폐기능의 장애정도가 20% 이상인 자 중 진폐증 병형이 1·2형으로 판정된 자 또는 심폐기능장애가 없는 자(F0)로서 진폐증병형이 2형 이상으로 판정된 자

유족(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한자)이나, 동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전 또는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사망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 중 미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. 보험급여의 수급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나, 업무상 재해의 경우 신속한 보상을 위해 상속에 관한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. (산재보험법 제50조)

나. 청구권자

- ① 미지급보험급여가 요양비와 휴업급여, 장애급여,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인 경우에는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청구권자가 되며, 이 때의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결정 방법에 따라 인정한다.
- ② 미지급보험급여가 유족급여인 경우에는 유족중 차순위 수급권자가 청구권자가 되며
- ③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가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전 또는 청구하였으나 지급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중 차순위 수급권자가 청구권자가 된다.

다. 청구절차

- ① 수급권자가 청구하고 지급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의 명의로 수령
- ②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의 명의로 청구, 수령 

3. 미지급의 보험급여

가. 개설

각종 보험급여의 청구권자는 당해 근로자나 그